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로 의원입니다.

- 본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최근 인공조명의 과도한 사용 등으로 인해 빛공해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환경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인공조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여, 환경부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16.1.27)을 통해 생활환경의 범위에 인공조명을 추가하고 환경오염의 범위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추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5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제명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개정('15.12.22)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생활환경 정의에 “인공조명”, 환경오염의 정의에 “일조방해” 및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추가하고 상위법 제명 변경 반영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